

# 대통 ~ 소통 ~

## 대조동 주민자치회

# 제 3회 주민총회

# 자료집



대조동 주민자치회



◆ 2023년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

◆ 인사말

◆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

◆ 5.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6.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 7.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8.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기타 활동 보고

◆ 9. 2024년 비전과 목표 제시 및 소감



## ◆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김익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실행사업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봄에 마을돌아보기를 시작으로 우리동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논의했고

작년에 심은 대추나무에 거름과 비료를 주며 가을을 기약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주민공론장 개최 및 여주시 세종대왕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좀 더 폭넓은 주민자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름에는 대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개장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8월 말복을 맞아서는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삼계탕 및 다과를 제공하는 '대추마을 어르신 효사랑 나눔잔치'를 열어 많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구월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발로 뛰어 발굴한 우리마을 의제를 주민들께서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제발굴뿐만 아니라 현장 사전투표 및 본행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봄, 여름 동안 사과대추나무 거름 주고 가지 치고 비료 뿌리며 가꾼 활동들이 어느덧 가을이 되어 동네 곳곳에 대추가 익어 시월에는 대추나무 수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과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나와 민속놀이도 즐기는 등 많은 주민들이 즐거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올 한해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함께하신 일들이 많지만 한정된 지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성숙한 주민자치는 이처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만들어 가는 길 어딘가에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호인 **대통! 소통!** 처럼 서로 소통하고 크게 이루어내는 대조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2024년 새해에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추마을 주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조동주민자치회장 **김익남**

#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           | 건강·복지분과 |           |
|-------------|-----------|-------------|-----------|---------|-----------|
| 1           | 분과장: 양승창  | 1           | 분과장: 한제경  | 1       | 분과장: 채종채  |
| 2           | 분과총무: 안미자 | 2           | 분과총무: 이준호 | 2       | 분과총무: 박순옥 |
| 3           | 강필숙       | 3           | 고윤철       | 3       | 나순학       |
| 4           | 김현주       | 4           | 김명선       | 4       | 박차열       |
| 5           | 박두수       | 5           | 김성임       | 5       | 윤진수       |
| 6           | 박중환       | 6           | 김영적       | 6       | 이봉호       |
| 7           | 이맹수       | 7           | 김후남       | 7       | 장수환       |
| 8           | 이미분       | 8           | 박순선       | 8       | 장진숙       |
| 9           | 이성하       | 9           | 원영숙       | 9       | 정영찬       |
| 10          | 추한웅       | 10          | 채정숙       | 10      | 진성준       |
|             |           | 11          | 홍성국       | 11      | 최근숙       |
|             |           |             |           |         |           |
| 분과위원        |           | 분과위원        |           | 분과위원    |           |
| 오재선<br>정성수  |           |             |           | 김일수     |           |

##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 ■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 총원 | 성별 |    | 연령별    |     |     |     |        | 단체/개인 별 |    |
|----|----|----|--------|-----|-----|-----|--------|---------|----|
|    | 남  | 여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단체      | 개인 |
| 35 | 18 | 17 |        | 1명  | 9명  | 18명 | 7명     | 13      | 22 |

### ■ 운영진 현황

| 회 장 | 부회장 | 감 사 | 사무국장 | 간 사 | 분과장(사업리더)  |
|-----|-----|-----|------|-----|--|
| 김익남 | 이맹수 | 채정숙 | 전말숙  | 전영미 |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양승창<br>-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 한제경<br>- 건강복지분과 : 채종채 |

### ■ 분과 현황

| 연 번 | 분과명        | 분과장 | 분과원수                | 주요사업·활동                                     |
|-----|------------|-----|---------------------|---|
| 1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양승창 | 12명<br>(위원10명,주민2명) | - 대조동 쓰벤처스 (쓰레기 어벤처스)<br>- 지하철역 주변 관내안내도 설치 |
| 2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 한제경 | 11명<br>(위원11명)      | - 대조동 북카페를 "공공도서관"만들기<br>- 가로수를 예쁘게         |
| 3   | 건강복지분과     | 채종채 | 12명<br>(위원11명,주민1명) | - 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br>-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조공원       |

### ■ 회의 운영

#### ■ 정기회의

- 일 시 : 매월 두번째 화요일 18:00
- 장 소 : 대조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 ▣ 운영진회의

- 일 시 : 매월 첫 번째주 화요일 11:00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자치사무실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담당 행정



▣ 분과회의

- 일 시 : 사업진행상 논의 사항 발생 할때 마다 실시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및 자치사무실
- 참석대상 : 각 사업 위원 및 분과원,(회장,간사,사무국장 참관)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회의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회의



- 건강복지분과 회의



- 성과공유회

- 일 시 : 2023년 12월 예정
- 장 소 : 주민센터 2층
- 진행방식 : 공론장 운영

## ▣ 기타 회의

- 사무국 회의

- 일 시 : 사업진행상 논의 사항 발생 할 때 마다 실시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및 자치회 사무실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담당행정

- 민관협력회의

- 일 시 : 사업 진행상 논의 사항 발생 할 때 마다 실시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및 자치회 사무실
- 참석대상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동장, 행정팀장, 담당행정



### 3.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시 기      | 운영내용                      | 세부 운영 내용   |
|----------|---------------------------|--|
| 2023. 1. |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 - 2023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br>- 정기회의 (대면)<br>- 임원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등 |
| 2023. 2. | 분과구성                      | - 3개 분과 구성 및 분과원 모집<br>- 분과별 마을돌아보기                      |
| 2023. 3. | 2024년 마을의제 발굴<br>및 분과사업진행 | - 마을 돌아보기<br>- 마을 의제발굴<br>- 건강복지분과 사과대추나무 거름주기<br>사업 진행  |
| 2023. 4. | 2024년 마을의제 발굴             |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탄소중립 교육<br>- 역량강화 워크숍                       |
| 2023. 5. | 주민공론장<br>자매결연지 방문 등       | - 세종대왕면 자매결연지 방문<br>- 주민공론장 운영<br>- 1동 1대학 관련 부서 및 대학 미팅 |
| 2023. 6. | 부서검토<br>분과사업진행            | - 06월 08일 의제 제출 마감<br>- 건강복지분과 비료뿌리기 사업 진행               |
| 2023. 7. | 1동 1대학 미팅<br>물놀이장 개장      | - 건강복지분과 사업 진행<br>(사과대추나무 물주기)<br>- 대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개장 운영   |

|          |                        |  |
|----------|------------------------|--|
|          |                        | (기타활동)<br>- 1동 1대학 미팅 (성공의대학)                                  |
| 2023. 8. | 2024년 마을의제<br>사전투표소 운영 | - 주민총회준비위 활동<br>- 관내 4개거점 사전투표소 분과별 운영<br>- "효"사랑 나눔 실천행사      |
| 2023. 9. | 2024년 마을의제 선정<br>주민총회  | - 제3회 주민총회<br>- 은평구 주민총회<br>-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br>- 1동 1대학 협약식(동국대) |
| 2023.10. | 분과 사업 진행               | - 대추 열매 추수 및 나눔 행사 등<br>동 지역사업 마무리 활동                          |
| 2023.11. | 분과 사업 진행               | - 동 지역사업 최종 마무리<br>- 제3회 주민총회 공유회 운영                           |
| 2023.12. | 주민자치회<br>성과공유회         | - 성과공유회<br>- 회계 마무리  |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

### ■ 감사 개요

-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제3항
- 감사일시 : 2023.01.26.(목) 15:00~18:00
- 감사장소 : 대조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 감 사 : 회계 및 사업감사 채정숙

### ■ 감사 내용

-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회계예산
- 사업감사
- 회계감사

##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      |  |
|------|--|
| 감사종류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
| 감사대상 | 대조동 주민자치회  |
| 감사내용 | 1. 사업 감사<br>1)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 및 분과 활동<br>2)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및 운영<br>3) 물품 구입 및 관리의 적절성<br>※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br>-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회의, 민관협력회의, 실무회의 등<br>2. 회계 감사<br>1)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br>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br>※ 지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
| 조치사항 | 1. 주요 문서 관리대장<br>2. 주민자치회 비치 및 보존 서류   |
| 종합의견 | 2022년 사업부문 감사결과 7건의 실행의제 사업 및 기타 사업을 분과가 적절하게 분담하여 계획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과 결과 공유를 잘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운영을 통해 즉각적인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회계부문 감사결과 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및 증빙서류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

별첨. 1.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 월 26 일

제출인 대 조 동    감사 (채 정 숙 )

은 평 구 청 장    귀 중

## 5.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 대조동 지역사업 6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가로수를 예쁘게~</li> <li>○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공원녹지과 조경팀)</li> <li>○ 사업내용 : 대조동 일대 가로수 정비 및 정형식 가지치기로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하고자 함</li> <li>○ 사업결과 : 대조동 일부분에 해당, 해당 지역의 환경은 쾌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간: 23'.1~6월</li> <li>- 수혜대상: 대조동 주민</li> <li>-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관내 일부분에 한정되어 아쉽지만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면 좋겠음</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대조동 북카페 "공공 도서관" 만들기</li> <li>○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li> <li>○ 사업내용 : 대조동 주민센터 내 북카페를 보다 전문적인 도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li> <li>○ 사업결과 : 사업 진행 중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등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간: 23'.1~12</li> <li>- 수혜대상:</li> <li>-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지하철역 주변 종합안내도 설치</li> <li>○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li> <li>○ 사업내용 : 대조동 안내도가 노후 되었고,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새로운 안내도 필요함</li> <li>○ 사업결과 : 관내 공원 두 곳에 설치 공원 이용, 주민들 만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간: 23'.3~4</li> <li>- 수혜대상</li> <li>-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기호 및 이모티콘 등 활용하여 안내도 보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움</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li> <li>○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건강복지분과</li> <li>○ 사업내용 : 22년 실행의제 사업인 "대추나무 식재 특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대조동 관내 식재한 대추나무를 추후 에도 주민들이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li> <li>○ 사업결과 : 사과대추나무에 봄부터 거름주고, 비료 뿌리며 관내 어린이대상 대추나무 사행시 및 글짓기 및 대추나무 살피며, 추수한 사과대추 열매를 활용 대추차, 떡매치기, 민속놀이 체험 등 주민 대상으로 사과대추 열매 나눔 행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간: 23'.2~10</li> <li>- 수혜대상: 대조동 주민</li> <li>-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밤새 달인 대추차 너무 맛있고, 어린이들 떡매치기 체험, 등 알찬 행사임</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조어린이공원</li> <li>○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건강복지분과</li> </ul>  |

- 사업내용 : 대조어린이공원의 개방된 공원 환경을 반려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 내 펜스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결과 : 대조어린이공원에 에티켓 팻말 및 펜스 등을 설치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쾌적한 공간 이용
  - 실행기간: 23'2~7
  - 수혜대상 : 대조동 주민 및 반려인 등
  -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펜스 설치로 인하여 화단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좋음

- 사업명 : 대조동 쓰벤처스
- 사업실행분과 또는 주체 :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 사업내용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 설치
- 사업결과 :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 설치를 통해 인근 환경이 쾌적해 짐
  - 실행기간: 23'2~5
  - 수혜대상: 대조동 일부 주민
  - 사업실행 후 위원들의 의견 : 주기적으로 CCTV 이동 설치 등으로 상습 무단투기 근절 되기를 바램

## 6.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사업선정 보고

| 분야                                 | 연번 | 사업명 | 투표 수 | 예산액 (천원) |
|------------------------------------|----|-----|------|----------|
| 사전투표 및 온라인 및 현장투표: 1,210명, 무효: 19명 |    |     |      | 100,000  |

|      |   |                         |     |        |
|------|---|-------------------------|-----|--------|
| 프로그램 | 1 |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집(집수리 사업)    | 718 | 11,000 |
|      | 2 | 대조동 주민 함께 놀아요(민속놀이 한마당) | 380 | 7,000  |
|      | 3 | 만보 걷기 챌린지, 함께 걷자 대조야~   | 517 | 2,000  |
| 환경   | 1 | 대조 아나바다                 | 478 | 11,000 |
|      | 2 | 두근~ 두근~ 내 감성에 물주기       | 340 | 9,000  |
| 동특화  | 1 | 대조 삼삼오오 대학              | 452 | 30,000 |
| 시설   | 1 | 대조어린이공원 조명 시설 개선        | 693 | 30,000 |

# {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3-02호

## 2023년 제3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4년 실행되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운영방식 : 대면 속의공론장 방식 등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및 사전투표소(거점) 및 방문 투표 및 주민총회 현장 투표
- 투표기간 : 1) 온라인 투표: 2023.08.16.(수) ~ 2023.08.25.(금)  
2) 사전 투표: 2023.08.16.(수) ~ 2023.09.08.(금)  
3) 총회현장 투표: 2023.09.08.(금) 09:00~14:00
- 대 상 : 대조동 주민 누구나 (투표권: 15세 이상 주민, 생활 주민)
- 참여인원 : 1,210명(온라인투표 3명, 사전투표 및 현장 투표 포함 1,210명)

### 2. 주민총회 투표결과

| 구분                       | 승인 사업     | 온라인투표                | 사전·현장투표 | 무효  | 최종합계 | 순위  |    |
|--------------------------|-----------|----------------------|---------|-----|------|-----|----|
|                          |           |                      | 유효      |     |      |     |    |
| 202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동)단위계획형 | 프로그램 2천   | 1.사랑으로 지어진 우리집       | 2       | 716 |      | 718 | 1위 |
|                          |           | 2.만보 걷기 챌린지          |         | 517 |      | 517 | 2위 |
|                          |           | 3.대조동 주민 함께 놀아요~     | 3       | 377 |      | 380 | 3위 |
|                          | 환경 2천     | 1.대조 아나바다            | 3       | 475 |      | 478 | 1위 |
|                          |           | 2.두근- 두근- 내 감성에 울 주기 |         | 340 |      | 340 | 2위 |
|                          | "동"특성화 3천 | 1.대조 삼삼오오 대학!        |         | 452 |      | 452 | 1위 |
|                          | 시설 3천     | 1.대조어린이공원 조명 시설 개선   |         | 693 | 19   | 693 | 1위 |

### 3. 주민총회 개최 모습



이상과 같이 대조동 제3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시는 대조동 주민자치회(☎02-305-02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 월 12 일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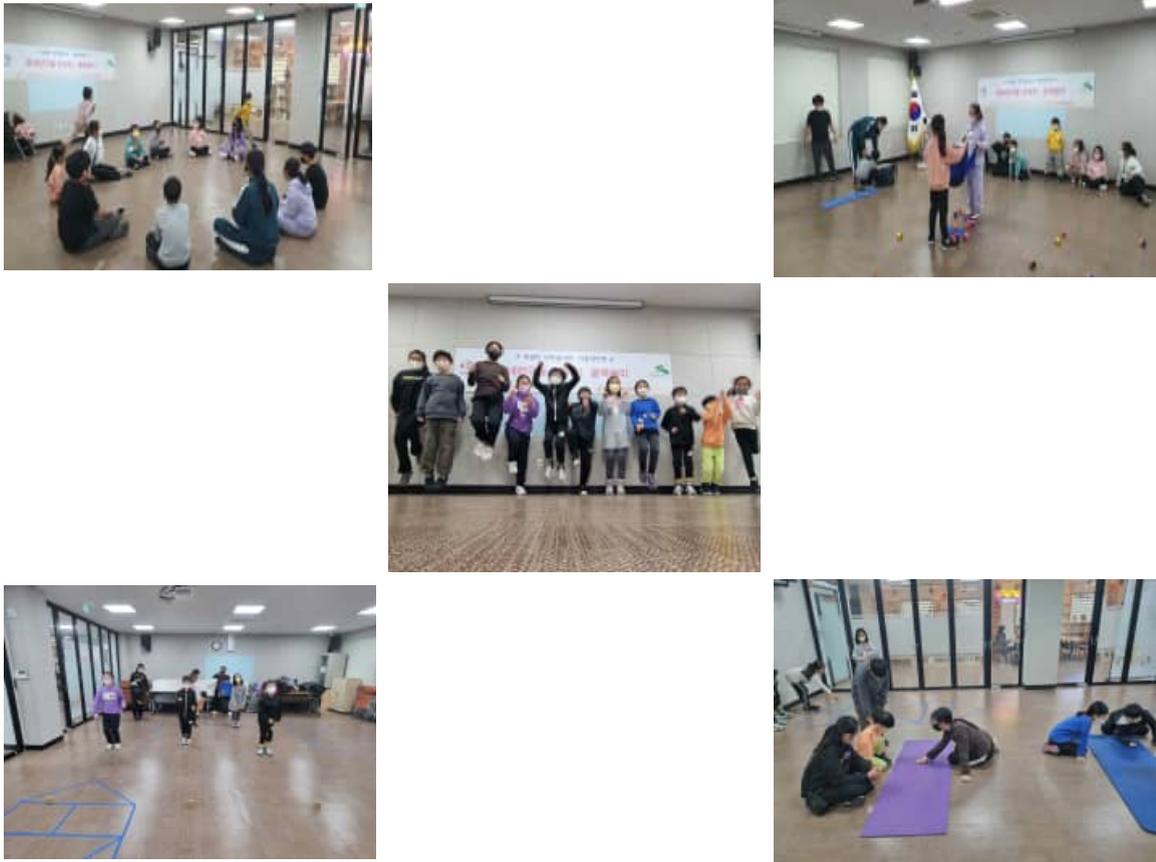


## 7.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 ■ 대조동 주민자치회 2기 위원 위촉식 2023.01.03.(수)



### ■ 특별한방학 놀이터 2023.01.04.(목)



■ 임원선출 2023.01.12.(목)



■ 구석~ 구석~ 마을돌아보기 2023년 03월~ 04월



■ “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 거름주기 2023.03.14.(화)



■ 자치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2023.04.11.(화)



■ “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 사업

▣ 대추나무 글짓기 및 사행시 짓기 2023.05.15.(월)



■ 주민공론장 1차, 2023.05.25.(목)/ 2차, 2023.07.26.(수)



■ “관내 종합안내도 제막식 2023.05.26.(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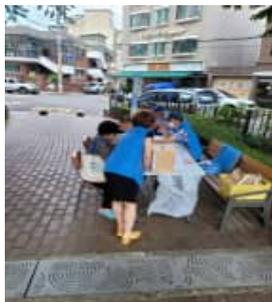
■ “내가 심은 대추나무 가꾸기” 비료 뿌리기 2023.06.01.(목)



■ 반려견과 함께하는 대조동 펜스 설치 2023.06~07월



■ 주민총회 준비 회의 및 사전투표소 운영 2023.07~08월



■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 3회 주민총회 2023.09.08.(금)



■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열매 나눔 2023.10.2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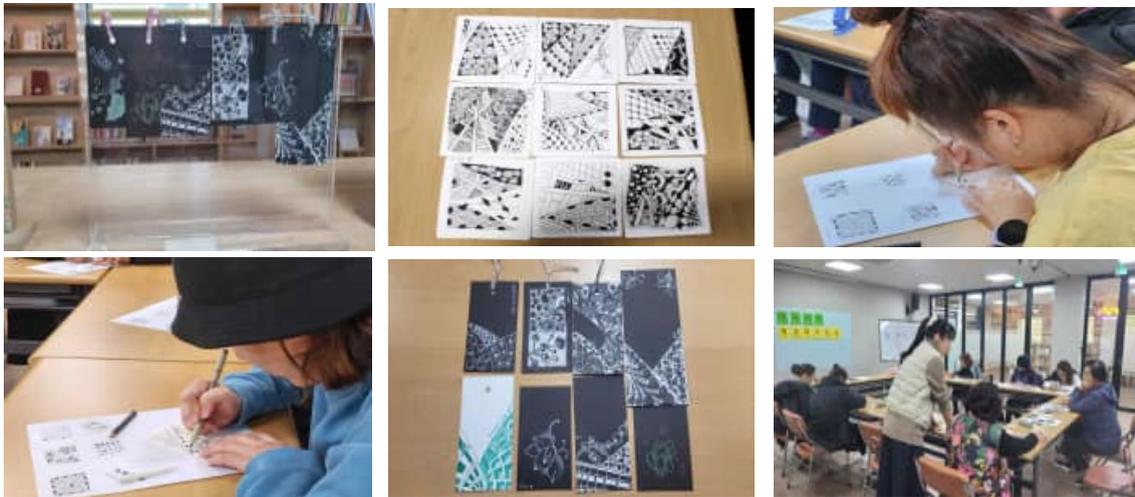


■ 다독다독북카페 1차~2차 자원활동가 교육(2023.07월~11월)



■ 기타 프로그램 운영

▣ 책갈피 만들기(2023.11.14.~12.08)



▣ 자수 가방 만들기(2023.11.17.~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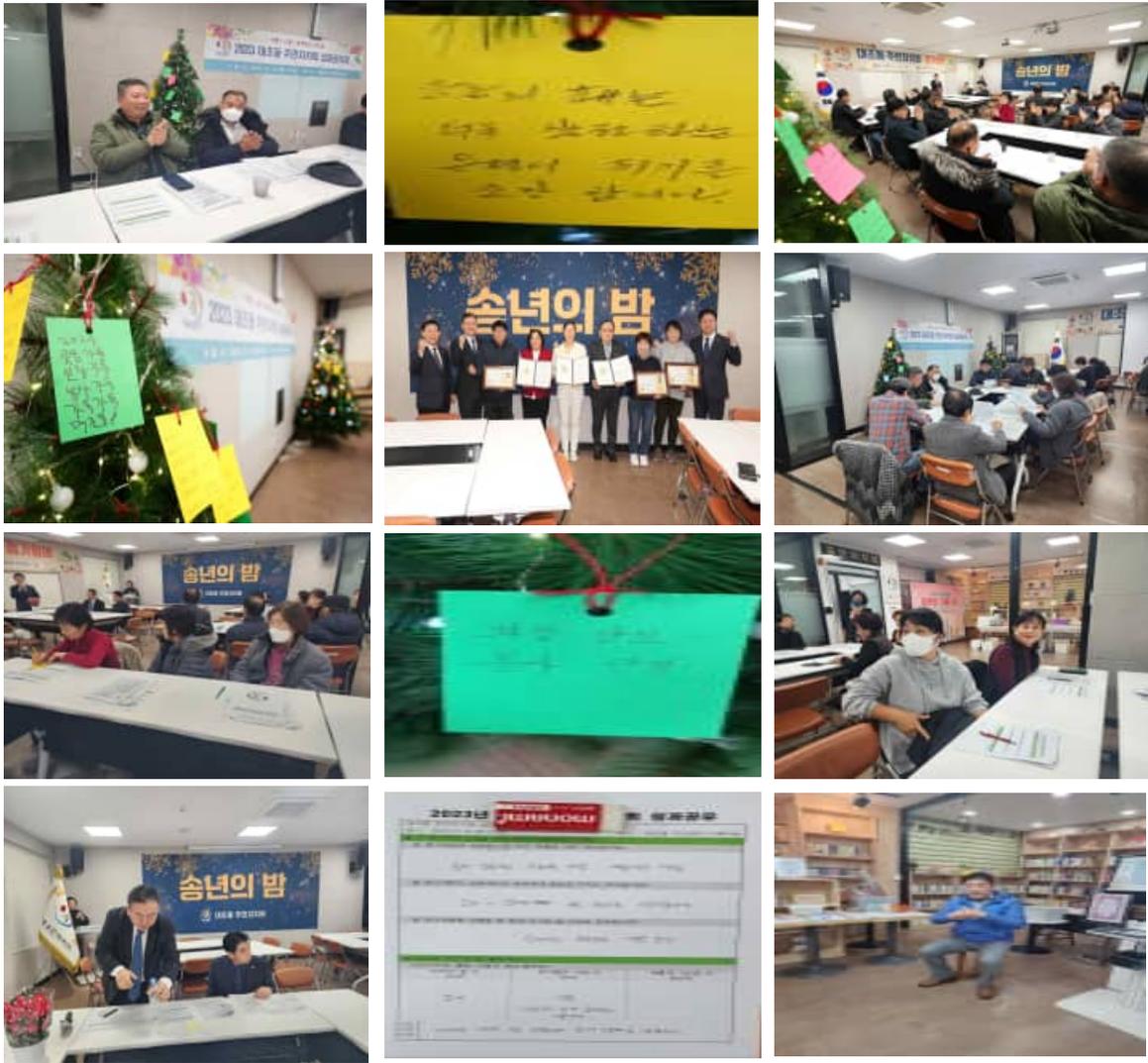


■ 커피와 시를 품다(2023.11.15.~11.22.)



■ 제3회 대조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2023.12.12.(화)





## 8. 2023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기타 활동 보고

■ 봉산 해맞이 2023.01.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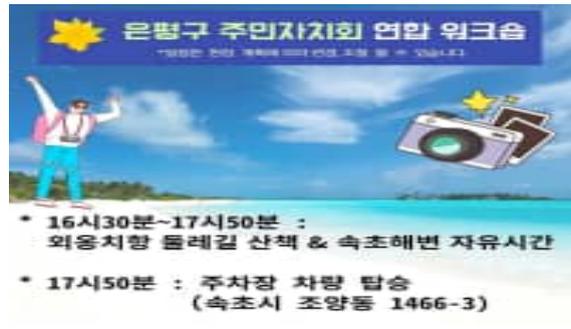


■ “동” 업무 보고회 2023.02.14.(화)



■ 은평구 주민자치회 워크숍 2023.03.15.~03.16.(화,수)





■ 탄소 중립 교육 2023.04.06.~04.07(목,금)



■ 헌혈 사랑 나눔 실천 2023.05.09.(화)



■ 여주시 세종대왕면(방문) 자매결연식 2023.05.23.(화)





■ 대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개장 2023.07.25.(화)



■ “효” 사랑 나눔 실천행사 2023.08.09.(수)



■ 은평구 주민총회(참여예산) 활동 2023.09.16.(토)



■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 2023.09.23.(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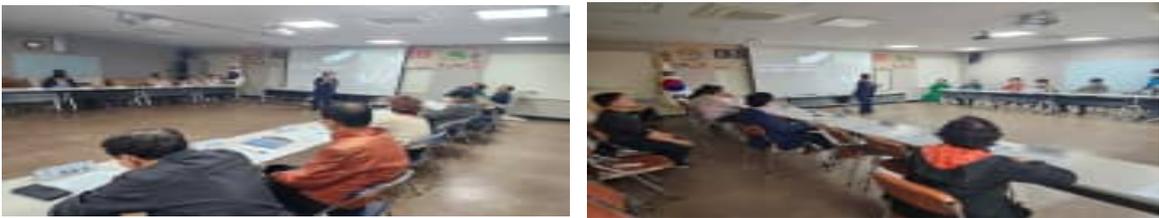
■ 1동 1대학 협약식/ 동국대학교 2023.09.26.(화)



■ 주민자치회 어울림한마당 2023.10.06.(금)~07.(토)



■ 자치위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2023.10.10.(화)



■ 이상동기 범죄예방 캠페인 및 순찰 2023.11.1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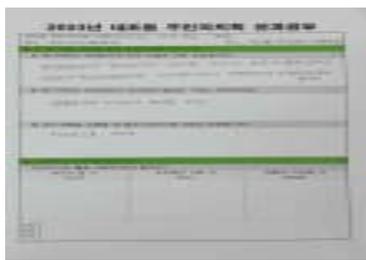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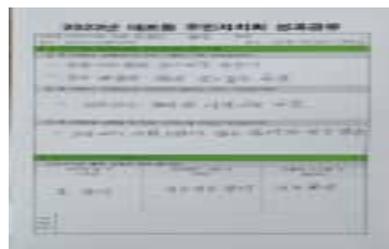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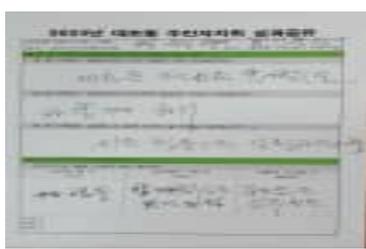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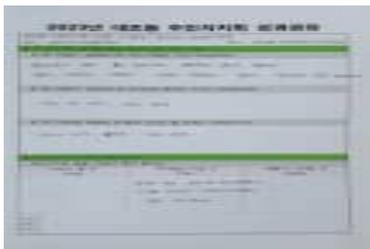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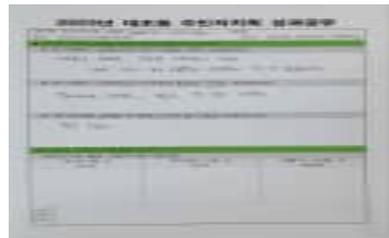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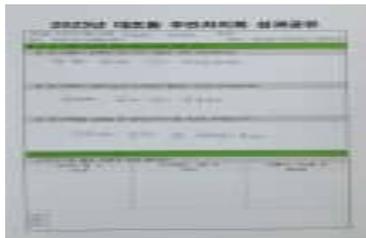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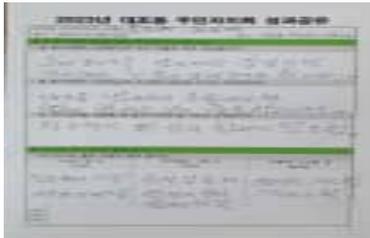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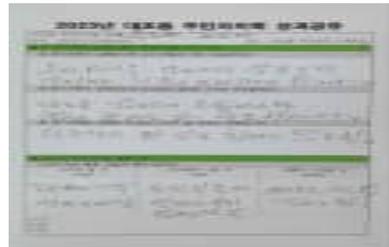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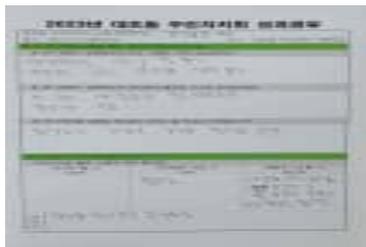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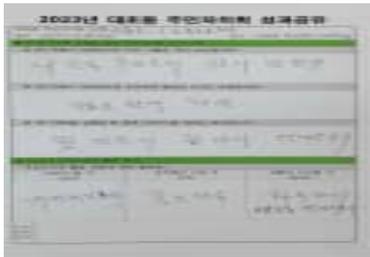


## 9. 2024년 비전과 목표 제시 등

### ■ 주민자치회 사무국 비전그리기 2023.11.29.(수)



### ■ 대조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 2023.12.12.(화)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안)

|                |                   |                    |
|----------------|-------------------|--------------------|
| 2021.1.22.~2.2 |                   | 내규 수립 의견수렴         |
| 2021.2.3       |                   | 내규 수립 워크숍          |
| 2021.2.8       | 1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
| 2021.2.16      | 2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
| 2021.3.9       | 제정                | 1차 정기회             |
| 2021.5.4       | 개정                | 3차 정기회             |
| 2022.3.15      | 개정                | 2022.3.정기회의(위원 회비) |
| 2022.4.12      | 전면개정              | 2022.4. 정기회의       |
| 2023.5.9       | 개정                | 2023.5. 정기회의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 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대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대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주민자치회 전임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고문”이 될 수 있다.

9.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0.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

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 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④ 예비자가 없을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 및 필요 시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 자진 탈퇴 시 2년 동안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② 위 제①항에 해당 하는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 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꺾워 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견을 통해 다음 각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사무국장
2. 간사
3.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분과 총무 각 1명

제12조(임원 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대조동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단. 분과원은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임원 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 종료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 회의 또는 분과 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운영진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 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탁, 수탁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 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 7. 분과 활동 활성화 및 실행 지원
  -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및 자치회장은 인선위원회를 구성 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② 사무국장을 선정하는 경우 대조동 주민과 관외 은평구민 중 역량이 비슷한 경우 대조동 주민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 ③ 면접 심사위원은 자치회장, 동장(행정팀장), 대조동 직능단체장 1명 등 3명으로 구성한다.

- ④ 업무 수행 중 결격사유 발생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계약 기간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장에게는 활동 기록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다.
- ⑥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단, 사무국장 임기는 자치위원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⑦ 사무국장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봉사직이다.
- ⑧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⑨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대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 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 ③ 분과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분과원 이라 한다.
- ④ 분과회의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⑤ 분과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 총무를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출한다.
- ⑥ 분과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⑦ 분과원은 분과 활동을 신청한 해당 동 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분과 활동을 한 주민으로서 정기회의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분과회의 참석 의결권은 있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진 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 또는 분과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운영세칙 개정이 필요할 시 정기회의 때 희망자를 뽑거나 정기회의에서 운영세칙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2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매월 두 번째 화요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재정, 개정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진 회의 및 분과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 결과 보고의 사항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다만,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전 개최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 총무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 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4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동장, 팀장, 동담당자 등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 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5세 이상의 주민(대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 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1% (서면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한다.
- ⑧ 주민총회 상장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기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재정, 개정, 폐지)
2.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단체 협조 사항 등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자치회관 운영

제2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이라 함은 주민휴게실, 문화사랑방, 다목적실, 생활체육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강사”라 함은 위촉을 받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일반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

제30조(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관련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주민들이 자치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 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예산
3. 수익금을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잔치 실현을 위해 수탁받은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 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간사는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4.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 규정을 준용·보관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 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 계좌로 월납, 분 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근조기, 축하기 및 현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자녀)에 한함

3. 현금성 경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키크비, 택시비, 세탁비 등)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 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미한 지출 및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결제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 본인 상해 3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0,000원 지급한다.

단. 2년 임기 중 1회에 한함.

⑦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⑧ 회비는 매월 보고하며 매년 12월 감사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⑨ 위원의 혜택은 연회비 및 회비 완료 회원에 한함

단, 2개월 이상 납입 하지 않을 경우 위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발행일 : 2023년 12월 12일**

**발행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김익남**

**편집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전말숙**

**대조동 주민자치회 간사 전영미**